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05,940,102	18,178,203
일반회계	530,216,897	15,906,507
특별회계	75,723,205	2,271,696
공기업특별회계	67,402,600	2,022,07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871,383	596,14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7,716,619	1,131,499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814,598	294,438
기타특별회계	8,320,605	249,618
강릉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519,165	15,575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47,600	13,428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2,630,353	78,911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025,691	90,771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390,750	11,723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1,299,500	38,985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특별회계	7,546	226

제 2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0년도 계속비이월사업조서는 별첨 "계속비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10년도 사고이월사업조서는 별첨 "사고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7,175,956 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11년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9,800,000 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비목 및 채무상환원리금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는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한다.